

# 일본,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 최근동향

■ 박 민 성\*

일본은 2010년 완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통신·방송 통합법 제정을 위해 준비해 왔으며,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를 거쳐 지금은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라는 전담반을 통해 통합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2006년 이후의 일본 통합법 논의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일본은 통신·방송의 융합에 발맞추어 수평적 레이어 중심의 법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각 레이어를 중심으로 통합법 제정을 위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콘텐츠’와 같은 레이어는 상당한 수준으로 통합법제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그 결과 2010년까지는 통합법을 완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체계로 디지털방송시대(2011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I. 개 요 / 1
- II. 일본 방송통신 통합 법체계의 진행과정 / 2
  - 1.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2006. 1. 20~2006. 6. 6) / 2
  - 2.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2006. 8. 25~2007. 12. 6) 총 20회 진행 / 7
- III.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 12
- IV. 결 론 / 20

## I. 개 요

일본 총무성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2006년 1월 20일~2006년 6월 6일)’, ‘통신방송의 종합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연구원, (02)570-4353, mspark@kisdi.re.kr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2006년 8월 25일~2007년 12월 6일) 등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는 통신방송심의회 산하에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두어 통신·방송 통합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된 일본 총무성의 통신·방송 통합법 논의진행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방송통신 통합 법제의 현상황과 그 의의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 Ⅱ. 일본 방송통신 통합 법체계의 진행과정

### 1.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2006. 1. 20~2006. 6. 6)

일본에서 방송통신의 통합법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6년 1월 시작된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通信·放送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 이하 ‘간담회’)로 거슬러 올라간다(백승혁, 2008). ‘간담회’는 일본 총무성에서 방송·통신의 통합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공식적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첫회의 회의에 앞서 발표한 개최요강에서 ‘간담회’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다. 즉, “(현재 일본에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보다 편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적·사업적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이용자들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당연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문과 (발전된 서비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총무성, 2006a)<sup>1)</sup>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간담회는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각 회마다의 주요

1)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sou/pdf/060120\\_si-01.pdf](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sou/pdf/060120_si-01.pdf)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개최경위 정리

	회의날짜	주요내용
1회	2006. 1. 20.	- 개최요강
2회	2006. 1. 23.	- NHK의 위상
3회	2006. 2. 7.	- 방송업계의 위상
4회	2006. 2. 21.	- 통신업계의 위상
5회	2006. 3. 9.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 횡단적인 과제에 관해
6회	2006. 3. 13.	- 관계사업자·단체의 입장 청취 (NHK, 일본케이블연맹, SKY PerfecTV,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7회	2006. 3. 22.	- 관계사업자·단체의 입장 청취 (일본민간방송연맹, NTT, KDDI, 소프트뱅크)
8회	2006. 3. 28.	- 자유토론(입장청취에 근거한 토의)
9회	2006. 4. 11.	- 자유토론(방송, NHK)
10회	2006. 4. 20.	- 자유토론(법체계·행정, 통신, NHK)
11회	2006. 5. 9.	- 자유토론(논점정리안(案))
12회	2009. 5. 16.	- 자유토론(보고서골자안(案))
13회	2009. 6. 1.	- 자유토론(보고서안(案))
14회	2009. 6. 6.	- 보고서정리

출처: 총무성(2006b)

이처럼 약 5개월간 진행된 간담회의 결과, 2006년 6월 6일 최종보고서<sup>2)</sup>가 발간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종보고서에서는 간담회가 지향하는 문제의식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된다. 즉, “일본에서 2010년 통신 인프라의 광대역화가 완료되고, 2011년 7월 지상파 TV

2)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sou/pdf/060606\\_saisyuu.pdf](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sou/pdf/060606_saisyuu.pdf)

방송의 디지털화가 완료된다면, 일본은 2011년에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다. 이러한 디지털화는 세계화,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지역 재생·인간 능력의 강화, 소프트파워의 강화 등의 과제달성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2006년의 일본사회로는 2011년 세계 최첨단의 인프라가 구축되더라도, ‘제도’와 ‘사업자’ 등의 문제로 인해 세계 최첨단의 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신·방송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보통신 선진국으로서의 일본의 강점이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만나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총무성, 2006b).

따라서 간담회의 최종보고서는 통신·방송 통합 서비스의 기술적인 조건이 확립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취해야 할 역할에 대해 정리한다. 즉, ‘정부는 통신·방송 규제의 위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통신사업의 공정 경쟁 촉진과 방송 사업자의 사업 확장의 자유를 확대하며, 각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행하기 쉬운 환경정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의 창의력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실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담회는 ‘융합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통신사업에서의 경쟁촉진’, ‘방송사업의 자유로운 확장의 촉진’, ‘NHK의 근본적인 개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송사업의 확장 촉진’과 ‘NHK의 근본적인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이 글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 (1) 방송사업의 자유로운 확장

‘간담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방송사업의 자유로운 확장’을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 완화’이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은 전파의 희귀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세계적 일본 미디어기업의 출현을 방해한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방식의 도입이나 중앙국의 지역방송국 출자 허용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네트워크

그룹내의 통합 불허나 지역방송사의 독자성 유지와 같은 정책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이미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활용 촉진'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화가 완료된 이후, 기존의 방송 사업자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 가운데, 남은 주파수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편익 증대와 수익 기회의 확대를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과의 융합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허의 도입과 통신 이용 방송법을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는 것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셋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IP멀티캐스트에 의한 재전송'이다. '간담회'는 IP멀티캐스트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은 기본적으로는 방송지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각 방송 사업자 관계자들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역방송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넷째,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대역의 활용의 경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비게 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어있는 주파수를 활용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통신·방송 서비스를 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신설비를 활용한 방송이 가능하고, 신규진입이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이다.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수십 년간 시장확대의 템포가 느리고, 경영 체질도 취약한 상태가 됐는데, 이는 방송 사업자간의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방송 사업자는 프로그램의 외부 조달과 거래의 위상을 검토하고, 외부 조달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노력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린다(총무성, 2006b).

## (2) NHK의 근본적 개혁

또한 '간담회'의 최종보고서는 'NHK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가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경영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을 들고

있다. 즉,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경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일부위원의 상근화’, ‘사무국의 강화’, ‘경영위원회 내부에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조직 설치’, ‘경영위원회 멤버 구성의 재검토’ 등을 통해서 NHK의 관리 감독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채널삭감’이다. ‘간담회’는 전파의 희소성과 개별 채널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NHK가 방송하고 있는 8개 채널의 수가 많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간담회’는 NHK의 위성방송채널 두 개 중 하나를 중단하고, FM방송채널은 2011년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서 총 6개 채널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상파 TV 방송은 시청자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즉시 삭감하는 것은 어렵고, 지역과 노인에 대한 배려 등의 관점에서도 현재의 2개 채널을 당분간 계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셋째는 NHK ‘본사와 자회사의 개혁’이다. 이는 NHK의 전체적인 슬림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선 본사의 스포츠부분은 분리하여 자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송 부문 역시 지상파 디지털화가 완료된 후 이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자회사의 경우는, 본사에서 출자를 지속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자회사의 근본적인 통합에 착수하며, 자회사의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넷째는 ‘프로그램의 브로드밴드 제공’이다. 즉, NHK의 과거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브로드밴드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대한 영상정보 발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를 폐지하고, 아카이브를 인터넷에서 유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 사업을 맡는 부서를 자회사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섯번째는 ‘국제방송의 강화’이다. 세계에서 ‘일본팬’을 늘리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국제 방송을 조기에 개시해야 하는데, 이를 NHK가 책임지는 것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방송 사업자의 노하우와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NHK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는 ‘수신료제도의 개혁’이다. 현재 NHK는 대규모의 수신료 미지불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으로서의 NHK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지배 구조 강화와 채널 축소, 조직의 슬림화 등의 조치를 통해 NHK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바탕 위에서 현재 수신료의 대폭 인하와 NHK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고 수신료 납부의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총무성, 2006b).

이러한 '간담회'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곧바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06년 6월 20일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정부·여당 합의(通信·放送の在り方に関する政府与党合意, 이하 '합의')<sup>3)</sup>를 발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합의는 향후 통합법 관련 논의를 진행시키는데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스미디어집중배제의 원칙을 시급히 완화하고, 방송사업자들이 외부조달을 증대하는 것을 기대하며'(방송관련), '최첨단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지원하고 네트워크 개방화 등 공정경쟁규칙을 정비하며'(통신관련), '기간방송개념의 유지를 전제로 통신과 방송에 관한 종합적 법체계 검토를 조속하게 착수하며, 2010년 까지 결론을 내린다'(융합관련)고 명시하고 있다(총무성, 2006c). 특히 통합법을 2010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한 것은, 이미 2011년 7월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종료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그 전에 법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2006. 8. 25~2007. 12. 6) 총 20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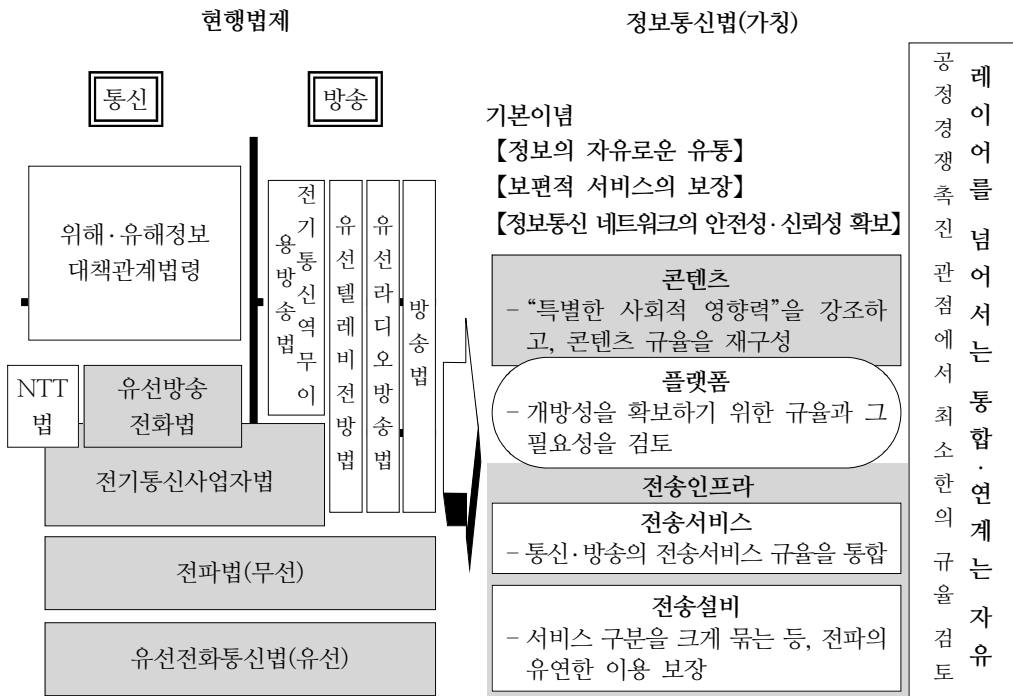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研究会, 이하 '연구회')는 2010년까지 통합법논의를 결론내기로 한 정부여당의 합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2007년 12월 6일 최종보고서<sup>4)</sup>를 발간하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총 20회의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본의 통신·방송

3)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sou/pdf/060623\\_1.pdf](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sou/pdf/060623_1.pdf)

4)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useikikaku/pdf/071206\\_4.pdf](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useikikaku/pdf/071206_4.pdf)

법체계를 통합하는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매체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체계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없애고 수평적 레이어(Layer) 체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플랫폼’, ‘전송인프라’의 세 규제대상 기준을 만들고, 가치 정보통신법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이다(김영덕, 2008a).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2007년 ‘연구회’의 통신방송 통합법 형태



출처: 총무성(2007b)

이처럼 ‘연구회’의 최종보고서는 통신·방송 법체계를 레이어 중심의 수평적 규제로의 전반적인 변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역시 각 레이어인 ‘콘텐츠’, ‘플랫폼’, ‘전송인프라’를 중심으로 중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연구회의 최종보고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콘텐츠부분이다.



‘연구회’의 최종보고서는 통신방송 융합시대 콘텐츠의 성격을 구분하여 각각에 다른 규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연성(公然性,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의 존재 여부’가 성격 구분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회’의 콘텐츠 구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유통하는 콘텐츠			
공연성이 없는 것	공연성이 있는 것		
‘통신의 비밀’보장 (개인서신 등의 특정인간의 통신)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 <sup>5)</sup> 을 갖지 않은 것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	
	오픈미디어콘텐츠(가칭) -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 기통신의 송신 (홈페이지 등)	미디어서비스(가칭)의 콘텐츠 - 현재의 방송 - 향후 등장하게 될 유사방송 콘텐츠 전송서비스 - 특별한 사회적영향력 정도에 기초한 유형화	
		일반미디어서비스(가칭) - 원칙적으로 현재 방 송규제를 완화	특별미디어서비스(가칭) - 현재의 지상파 TV 방송에 대한 규율을 원칙적으로 유지

출처: 총무성(2007b)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회’가 제시한 융합 콘텐츠를 구분하는 첫째 기준은, ‘공연성의 여부’로서, 개인간의 통화와 같은 공연성이 없는 콘텐츠는 통신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공연성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도,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것은 ‘오픈미디어콘텐츠’라고 하여 홈페이지와 같이 불특정인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

5) ‘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특정한 사회적 영향력’이란, ‘현재의 방송이 직접적이고 순간적으로 전국의 불특정다수의 시청자에 대해 동시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미디어로서 가지는, 다른 정보통신미디어와 비교해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정한 사회적 영향력’ 정도를 평가하는 판단지표로는, ‘콘텐츠의 종류’, ‘서비스의 품질’, ‘접속의 용이성’, ‘시청자수’, ‘유료/무료의 구분’이 있다.(총무성, 2007b)

다. 이러한 오픈미디어콘텐츠에 대해 연구회는, 현행 인터넷상의 규율수준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서비스의 편중이나 불공평,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 의무와 더불어, TV처럼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김영덕, 2008b).

그리고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콘텐츠는 현재의 방송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유사 방송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일반미디어서비스’와 ‘특별미디어서비스’로 구분된다. 연구회의 콘텐츠 종류 구분에 의하면, 오픈미디어 콘텐츠에는 ‘홈페이지’, 일반미디어서비스에는 ‘케이블TV’, 특정미디어서비스에는 ‘지상파방송’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에 근거한 이러한 구분은 콘텐츠별 규율에 탄력성을 주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김영덕, 2008b).

또한 ‘간담회’의 최종보고서에는 콘텐츠 이외의 레이어인 ‘플랫폼’과 ‘전송 인프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앞으로의 논의에서 다루어야 할 지점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우선 플랫폼<sup>6)</sup>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본에서 플랫폼 사업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성장해 왔는데, 플랫폼사업자가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플랫폼을 다른 레이어에서 구분하여 독립적인 규제로 입법화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다만 플랫폼이 새로운 병목(bottle neck)으로 기능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송 인프라의 경우, 전송서비스와 전송설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우선 현행 전송서비스규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TV 모두 동일하게 다채널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6) ‘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서의 플랫폼이란, 물리적인 전기통신설비와 연계하여 다수의 사업자끼리 또는 사업자와 다수의 사용자를 중개하고, 콘텐츠전송, 전자상거래, 공적 서비스 제공, 기타 정보유통의 원활화 및 안전성·편리성 향상을 실현하는 서비스로서, 네트워크에서의 인증·과금·결제 서비스, 포털서비스, 인터넷물, 검색서비스, OS 등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수탁방송<sup>7)</sup>사업자에 대한 규제), 유성텔레비전방송법(유선TV 설비 사업자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서비스 이용방송 규제)으로 적용법령이 나누어져 있다(총무성, 2007a)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전송 서비스규제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전송서비스규제를 일원화하고,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업전개를 가속하며, 이를 통해 공정경쟁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에 중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총무성, 2007b). 그리고 전송설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전송서비스는 통신/방송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유선/무선이라는 물리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신과 방송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라디오방송국의 면허제도 재검토와 같은 제도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총무성, 2007a).

그리고 둘 이상의 레이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통합법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연구회'의 최종보고서는, 사업자들이 각 레이어를 초월하여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2007b)라고 명시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송서비스와 설비 분야에서 독과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자가 콘텐츠나 플랫폼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분쟁발생의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유통과 미디어의 다원화 확보·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레이어를 넘어선 거래규제 및 수직형 겸업의 일부 제한과 같은 규제정리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2007a).

이처럼 '연구회'는 통신방송 통합법제에 관한 기존 법체계를 '콘텐츠', '플랫폼', '전송인프라'의 레이어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성과를 남겼으며, 그 중에서 특히 수평적 규제 원칙과 미디어 콘텐츠 성격의 구분은 연구회가 남긴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회'의 성과는 이후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를 위한 검토위원회'로 이어진다.

7) 일본의 위성방송사업자는 수탁방송사업자와 위탁방송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수탁방송사업자란 JSAT처럼 자체 위성을 소유·운용하면서 위성방송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자이며, 위탁방송사업자는 수탁방송사업자들로부터 방송설비, 회선 등을 빌려서 방송하는 사업자를 뜻한다(조창화, 1998).

### Ⅲ.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의 논의 진행상황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検討委員会, 이하 ‘검토위원회’)는 2008년 2월 25일 처음 회의를 시작하여, 2009년 7월 23일 현재까지 총 19회를 진행하였다.

이 기간동안 발표된 중요한 문서들로는, 2008년 6월 발표된 ‘중간논점정리(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ついて(中間論点整理))<sup>8)</sup>’와 2008년 12월의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아젠다(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に関する検討アジェンダ, 이하 ‘아젠다’)<sup>9)</sup>’를 발표하였는데, ‘중간논점정리’와 ‘아젠다’의 내용에 겹치는 부분이 많고, ‘아젠다’가 보다 최근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아젠다’의 내용을 이 글에서는 정리하기로 한다.

‘아젠다’는 통합법체계를 위해 총 7개의 논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체계전반’, ‘전송설비’, ‘전송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레이어’, ‘이용자권익보호 및 향상’의 논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각각의 논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houtai/pdf/080609\\_2\\_s3.pdf](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houtai/pdf/080609_2_s3.pdf)

9)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houtai/pdf/081226\\_1.pdf](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joho_tsusin/houtai/pdf/081226_1.pdf)

<표 3> '검토위원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논점항목	구체적 내용
법체계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춰, 규제의 범위를 완화하고, 통신·방송의 융합형 서비스의 법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li> <li>- 구체적으로, 현재 '수직분할' 형태의 법체계에 관해 재검토하고, 특히 '컨텐츠서비스', '전송서비스', '전송설비'의 3개의 레이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법체제로 개정함.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전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레이어안과 레이어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통일적인 경쟁조건 및 이용자보호를 확보함.</li> </ul>
전송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함.</li> <li>-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 등을 위해, 기술 기준의 개발·허가 절차를 재검토함.</li> <li>- 화이트스페이스(방송에 사용되기로 할당되어 있지만, 다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함</li> </ul>
전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방송업무와 유선TV 방송 채널 임대 및 유선 방송 전화 등 전송서비스로 유형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보전송서비스 규제대상 적용 여부를 검토함. 그리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정비·합리화해야 규제가 있는지 검토함. 또한, 전송 서비스 규제에서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과 예외 규정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함.</li> <li>- 유선 TV방송 시설에 대해, 현행 규제에 보장된 수신자이익의 지속적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면서, 유선TV 방송 시설 설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검토함.</li> </ul>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미디어콘텐츠의 범위를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으로 하는 것을 검토함</li> <li>- 유한하고 희소한 전파를 이용하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계획적인 보급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틀을 검토함.</li> <li>- "미디어 서비스"의 위치와 역할의 차이에 따라 관계 법률을 레이어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되도록 개편함.</li> <li>-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신자 이익 보호의 위상을 검토함. 기타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규율의 합리화를 검토함.</li> <li>- 현재의 케이블 TV 방송법상의 '의무재전송', '동의 재전송결정'을 검토함.</li> <li>- '공연성이 있는 미디어콘텐츠(오픈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공급자 책임제한 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의 범위를 불법 정보 일반 및 형사상의 책임까지 확대는 것에 대해 검토함.</li> </ul>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유료방송관리사업에 관한 규제를 콘텐츠 규율로 포함시킬지, 콘텐츠 규율과 구별할 지에 관해 법기술적인 관점에서 검토함.</li> </ul>
레이어(la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레이어에 속하는 사업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입장에서,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의 알선·중재를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함.</li> </ul>
이용자 이익 보호 및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이익 확보 향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li> <li>- 이용자의 이익확보·향상의 관점에서, 정보시큐리티와 시청자프라이버시의 취급에 관한 제도정비를 검토함.</li> </ul>

출처: 총무성(2008a)

그 후, 2009년에 들어와서 ‘검토위원회’는 ‘아젠다’에서 정리한 구체적인 논점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검토위원회’의 2009년 논의진행상황

	회의날짜	주요내용
12회	2009. 1. 30.	- 전송설비, 디지털전환 후 전파이용(화이트스페이스 등) 검토
13회	2009. 2. 27.	- 전송서비스, 케이블TV 허가제도 및 임대, 이용자보호 검토
14회	2009. 4. 2.	콘텐츠규제(미디어서비스의 범위, 위성을 통한 콘텐츠, 프로그램규제 등) 검토
15회	2009. 4. 21.	-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응하는 전파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발표 - 전송서비스·케이블TV 관련 규제 검토 -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촉진
16회	2009. 5. 12.	- 콘텐츠 규제
17회	2009. 6. 1.	- ‘정리의 방향성(取りまとめの方向性)’ 검토
18회	2009. 6. 9.	- 사업자들의 입장 청취(소프트뱅크, 위성방송협회, SKY-JSAT, 일본케이블연맹, 일본민간방송연맹)
19회	2009. 6. 15.	-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 형태(안)(2008년 자문 제14호에 대한 답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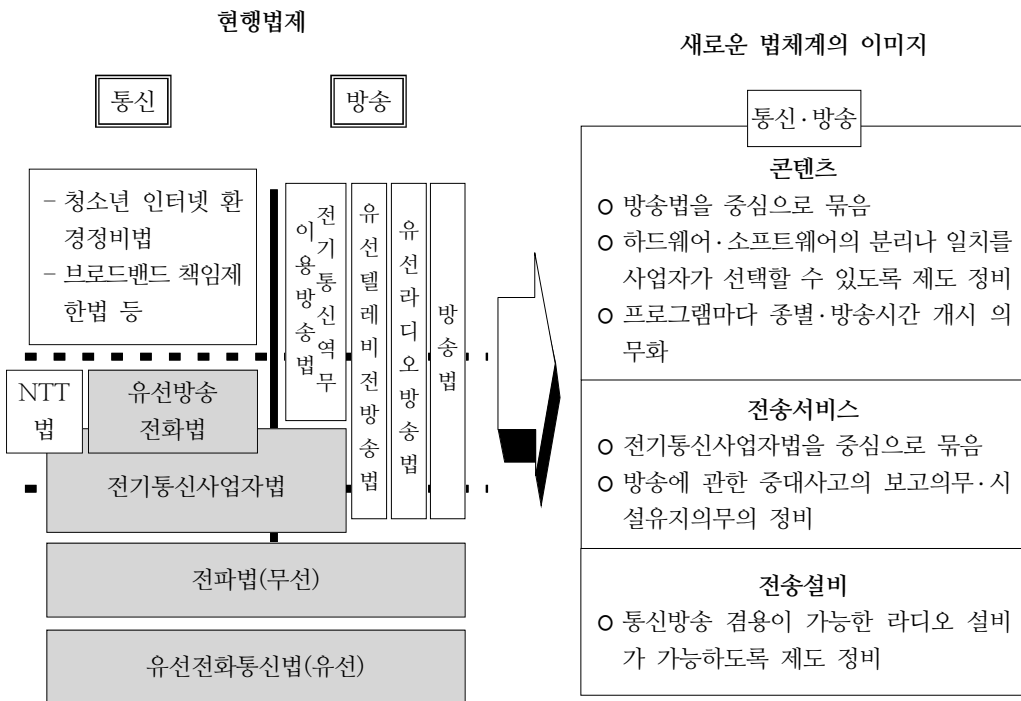
이처럼 2009년의 ‘검토위원회’는 각 회의마다 ‘아젠다’의 특정 논점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관련 산업관계자의 입장을 중간중간에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서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19회 회의의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 형태(안)(2008년 자문 제14호에 대한 답신) (通信·放送の総合的な法体系の在り方〈平成20年諮問第14号答申〉(案), 이하 ‘답신’)<sup>10)</sup>을 들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답신’의 내용 중에서 ‘법체계전반’과 ‘디지털전환 후 주파수이용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0)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26869.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26869.pdf)

‘답신’에서 밝히고 있는 ‘법체계 전반’은 2007년 12월 ‘연구회’의 최종보고서와는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콘텐츠’, ‘전송서비스’, ‘전송설비’를 중심으로 현행 법률을 재편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새로운 통합법제를 ‘(가칭) 정보통신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검토위원회’의 ‘답신’에서는 특별한 명칭으로 결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체계’로 남겨 놓는다.

[그림 2] 2009년 ‘검토위원회’ ‘답신’의 법체계 형태



출처: 총무성(2009b)

이처럼 ‘콘텐츠’, ‘전송서비스’, ‘전송설비’를 중심으로 법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들이 각각 어디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총무성은 현행 통신·방송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5〉 통신·방송에 관한 현행 주요 법률 구분

주요 규제대상	법률명(괄호 안은 공포한 년도)
콘텐츠	① 방송법(1950년) ② 유선라디오방송법(1951년) ③ 케이블TV 방송법(1972년) ④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2001년) ⑤ 공급자책임제한법(2001년) ⑥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2008년)
전송서비스	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1957년) ② 전기통신사업자법(1984년) ③ NTT법(1984년)
전송설비	① 전파법(1950년) ② 유선전기통신법(1953년)

출처: 총무성(200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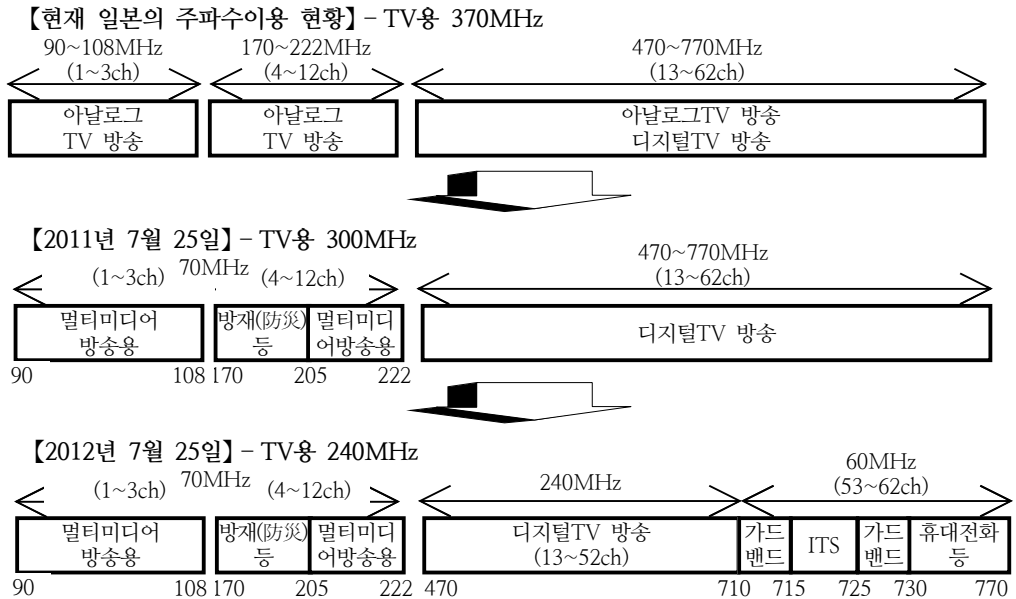
‘답신’에 나타난 또다른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 후 남은 주파수를 활용하는 계획도 들 수 있다. ‘답신’에 의하면, 현재 일본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위해 사용되는 370MHz의 주파수대역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2년에는 240MHz만을 사용하고 남은 주파수는 재난방지, 멀티미디어, 휴대전화주파수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그림 3〉 참조).

그 외 ‘검토위원회’의 2009년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전송서비스와 케이블관련 규제에 관해 입장을 정리한 15회(4월 21일) 회의를 들 수 있다. 이 날의 회의에서는 전송서비스와 케이블 관련 규제에 대해서 정리하였는데, 우선 전송서비스에 관한 문서로는 ‘전송서비스의 규제 위상에 대해(伝送サービスの規律の在り方について)<sup>11)</sup>’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전송서비스관련 중요 쟁점으로 ‘채널임대제도’, ‘수탁방송’, ‘유선방송전화’를 꼽고 있는데, 문서에 나타난 각 쟁점별 현행 제도의 특성과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11)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19120.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19120.pdf)



[그림 3]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주파수재편계획



출처: 총무성(2009b)

<표 6> '전송서비스 규제 위상에 대해'의 주요내용

전송 서비스	현행 제도의 개요	새로운 법체계 규제의 모습
채널임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 TV 방송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 통신 사업'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현재 케이블 TV 방송법으로 규제되고 있음.</li> <li>- 케이블 TV 방송 시설 사업자는, 유선방송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가 케이블TV 방송 시설의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인해야 함 (유선 TV 방송법 제9조). 단,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모두 사용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사용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아도 됨(유선 TV 방송법 제9조, 유선 TV 방송법 시행 규칙 제12조).</li> <li>- 케이블 TV 방송시설의 임대료, 기타 이용 조건에 대한 계약 약관을 정해야 한다(유선 TV 방송법 제1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속화·대용량화·저렴화,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등, 케이블TV 방송법 시행 당시(1973년)와는 달리, 채널 임대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대체수단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음.</li> <li>- 채널임대 제도에 대해서는, 케이블TV 방송법으로 교체하고, 전기 통신 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함.</li> </ul>

전송 서비스	현행 제도의 개요	새로운 법체계 규제의 모습
채널임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 TV 방송 시설의 운용이 수신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무 대신은 시설 개선 명령(시설계획의 변경, 이용 조건의 변경 등)을 내릴 수 있음(유선 TV 방송법 제24조 제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실제로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 조치를 강구해야 함.</li> </ul>
수탁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 방송에 대해 현행 법체계는 방송용주파수를 할당하고, 방송 보급 기본 계획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위탁 방송사업자만 수탁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음.</li> <li>- 수탁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위탁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 보장, 부당하게 높은 가격 설정에 의한 위탁 방송 기회 제약 방지, 인정된 위탁방송 확보 등의 관점에서, 방송법 제52조의9부터 제52조의12까지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규제가 부과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위탁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의무</li> <li>② 서비스 제공조건을 총무 장관에 신고</li> <li>③ 서비스 제공 조건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 등에 총무대신의 변경 명령</li> </ol> </li> <li>- 위탁방송서비스는, 외형적으로는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만, 방송관련업무로 위탁 방송 업무와 함께 방송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적당하고, 전기 통신 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됨(전기 통신 사업법 제2조 제4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전송 서비스 규제(전기통신사업법)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li> <li>- 첫째, 인가를 받은 특정 방송 사업자(현재 위탁방송사업자에 해당)에 대해서만 업무를 제공할 의무를 폐지하면, 위탁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편집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li> <li>- 둘째, 서비스 제공조건을 총무 대신에게 신고하는 것과 총무 대신의 변경 명령을 폐지하면, 방송시설 설치자의 서비스 요금이 특정 방송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과 같은 우려가 있음.</li> </ul>
유선방송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방송전화 서비스(유선 라디오방송용의 유선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타 해당 유선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공하는 경우,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업무 지역에 한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인정.</li> <li>- 해당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유선통신설비에 대해, 다른 유선방송전화 업체의 설비와 상호접속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시설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방송전화는 가입전화망에 못 미치는 지역(주로 농·산·어촌)에서 유선라디오방송 시설을 이용한 전화의 대체적인 서비스로,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57년 이후 통신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개인마다 휴대 전화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유선방송전화를 다른 전화 서비스와 비교하여 특별한 규제를 지속하는 의의가 사라지고 있음. 따라서 특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보통의 전화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적당함.</li> </ul>

출처: 총무성(2009c)

또한 케이블 TV와 관련된 사항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위원회의 문서로는 '케이블 TV의 규제 위상(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に関する規律の在り方)<sup>12)</sup>을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우선 현재 일본 케이블 TV 관련 규제현황을 정리하는데, 현재 일본에서 케이블 TV 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대해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유선 TV 방송법 제3조), 이를 위해서는, 그 시설 구역이 하나의 또는 복수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전역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심사 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한다(유선 텔레비전 존 방송법 관계 심사 기준 제4조(1)). 또한 허가에 관련된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나 허가를 받은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에도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유선 TV 방송법 제10조의 2)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케이블 TV 방송 시설사업자는 허가에 관련된 시설을, 총무성령으로 정한 기술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유선 TV 방송법 제8조).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를 통해 케이블TV 방송과 같은 형태의 방송을 실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지고 있고, 통신 서비스의 고속화·대용량화·저렴화가 진전되어 케이블 TV 방송과 같은 유선 서비스방송을 이용하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케이블 TV방송법 시행 당시(1973년)와 비교하여, 케이블 TV 방송 시설 모두가 지역 독점의 경향에 빠진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제에 의해 담보되는 일정한 기술 수준의 확보와 크립스키밍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케이블 TV 방송 시설자의 부담 완화와 유연한 사업운영의 촉진을 위해서,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총무성, 2009d).

또한 케이블 TV 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는 총무대신이 지정한 수신 장애 지역에서 해당 지역이 속한 지역의 TV 방송 등을 수신하여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변경없이 동시 재송신해야 한다(유선 TV 방송법 제13조 제1항)'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일반 재송신과 달리 의무 재송신은 방송 사업자 등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유선 TV 방송법 제13조 제2항),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조건을

12)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19121.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19121.pdf)

정한 계약약관에 대해 총무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의무재송신의 요건인 ‘수신 장애 지역 지정’은 한번도 달라진 적이 없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의무재송신 제도가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해온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매체로서의 케이블 TV 방송은 난시청 해소에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수신자이익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의무송신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까지 수신 장애 구역의 새롭게 지정된 실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지정 수속의 간소화 등 의무재송신의 위상과 규제의 합리화를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리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통신·방송 통합법 진행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총무성은 통신·방송통합법을 2010년 까지 완성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장기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수평적 규제라는 통합법의 원칙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7개의 주요논점을 정해서 법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신과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수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통신·방송 통합법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원래의 계획대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전에 완성시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법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김영덕(2008a). “일본의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방향과 시사점”. 한국언론학회 “융합시대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방안” 세미나(2008년 1월 31일) 자료
- \_\_\_\_\_(2008b).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서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백승혁(2008). 일본 총무성,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대한 어젠다 발표.  
KBI 동향과 분석 2008년 9월 29일.
- 조창화(1998). 21세기 방송론. 나남출판.
- 총무성(2006a).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通信·放送の在り方に関する懇談会)” 개최요강.
- \_\_\_\_\_(2006b).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 최종보고서.
- \_\_\_\_\_(2006c). “통신·방송의 위상에 관한 정부·여당 합의”
- \_\_\_\_\_(2007a).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최종보고서.
- \_\_\_\_\_(2007b).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 최종보고서 포인트.
- \_\_\_\_\_(2008a).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해(중간논점정리)”
- \_\_\_\_\_(2008b).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어젠다”
- \_\_\_\_\_(2009a). “중간정리의 방향성”
- \_\_\_\_\_(2009b). “통신·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의 방향성(2008년 자문 제14호 답신(案))”
- \_\_\_\_\_(2009c). “전송서비스의 규제 위상에 대해”
- \_\_\_\_\_(2009d). “케이블TV의 규제 위상에 대해”